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4 No.24

WTO 복수국간협정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추진 동향과 전망

2015년 6월

정혜선 연구원

이근화 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요 약]

I. WTO 복수국간협정 개요	1
II. 개정 정부조달협정(Revised GPA)	2
1. 개정 정부조달협정 개요 및 추진 동향	2
2. 개정 정부조달협정 주요 내용	4
3. 기체결 FTA와 개정 정부조달협정	7
4. 개정 정부조달협정 기대효과 및 향후 전망	8
III. 개정 정보기술협정(ITA-Ⅱ)	10
1.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동향	10
2.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배경과 쟁점사항	11
3. 개정 정보기술협정 기대효과 및 향후 전망	14
IV. 환경상품협정(EGA)	15
1. 환경상품협정 개요 및 추진 동향	15
2. 환경상품 무역동향과 한국의 제안 품목	17
3. 주요 예상 쟁점 및 향후 전망	21
V. 결론 및 시사점	23

☐ 보고서 내용 문의처

정 혜 선 연구원 (☎ 02-6000-5344, hsjung1110@kita.net)

이 근 화 연구원 (☎ 02-6000-5263, kunalee@kita.net)

* 『Trade Focus』는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http : //iit.kita.net](http://iit.kita.net))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TO 복수국간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이란 특정 의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WTO의 일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정이다. WTO 차원의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은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통상의제를 제기하고 이를 주도하는 통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부조달협정(GPA)은 이미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II),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이 진행 중이다.

GPA는 협정 참여국에만 협정 내용이 적용되는 복수국간협정으로 발효 이후 1997년부터 진행된 개정협상을 통해 2011년 개정 GPA가 타결되어 2014년부터 일부 국가에 한해 개정 GPA가 공식 발효되었다. 한국은 UR타결 직후인 1994년에 GPA의 24번째 국가로 가입하여 1997년 발효하였고 개정 GPA에 대해서는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ITA II는 IT제품의 무관세화를 규정한 협상으로 WTO 각료선언 형태로 타결되어 1997년 정식 발효하였다. ITA I 발효 후 회원국들은 ITA 확대협상을 개시하여 품목확대 및 대상 범위(비관세 장벽 포함), 참여국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 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협상 주요국인 미국과 중국은 2014년 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합의를 완료하였으나 우리나라대만 등은 마중 합의사항에서 빠진 자국 관심품목의 반영을 주장하고 있어 중국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향후 주요 협상 쟁점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주요 품목이 ITA 확대협상품목에 반영될 경우 이들 상품의 직접적인 수출 증가 효과와 기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료 및 부품의 단가 하락 영향으로 우리나라 IT 산업의 긍정적인 전후방 연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GA는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해 출범한 협정으로 2014.7월 협상출범 공동선언 이후 최근 6차 협상까지 655개의 품목이 검토되었다. 환경상품은 특성 상 중간재인 경우가 많고 환경 목적 이외의 용도를 지니는 다용도 상품일 가능성이 높아 용도표기(Ex-out)를 수반하므로 향후 협상에서 품목선정과 더불어 용도표기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협상 참여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3차 협상부

터 공식 참여해 환경편의성이 인정되는 품목 43개를 선정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2014년부터 민관 합동 TF가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WTO 다자차원의 논의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DDA의 의제들이 복수국간협정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협정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에게 우호적인 협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문

I. WTO 복수국간협정 개요

- ☐ WTO 복수국간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이란 특정 의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WTO의 일부 회원국들만을 협상 대상으로 하는 협정으로 적용 범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 번째 유형은 복수국간협정이 WTO 설립협정 부속서4에 포함되는 경우로 협정을 수락한 참여국 간에만 적용되며, 정부조달협정(GPA)이 이에 해당함
 - 두 번째 유형은 협정 참여국들의 교역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할 때에 협정이 발효(critical mass)되고, 협정에 따른 조치가 모든 WTO 회원국에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 정보기술협정(ITA), 환경상품협정(EGA)이 이에 해당
- ☐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교착상태에 빠져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선진국은 다자간 협상과는 별도로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국간협정을 제안하고 이를 주도하는 통상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WTO 다자간 협상은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할 때까지 협상을 지속하는 일괄 수락(Single Undertaking)원칙을 따르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논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반면 복수국간협정은 관심을 가진 국가만이 참여해 협정 의무를 부담하므로 협상 타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고 특정 이슈만을 다뤄 다른 의제를 협상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아 다자간 협상보다 활용여지가 높음
- ☐ WTO 설립 초기에 타결된 복수국간협정*도 해당 의제에 대한 DDA 다자 차원의 진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협정 발효 이후 상당한 시일이 흘러 개정이 불가피 해져 복수국간협정 개정 및 확대 협상도 진행 중임
 - * 정부조달협정(1994 타결, 1995 발효), 정보기술협정(1996 타결, 1997 발효)
- ☐ 이에 본 보고서는 3개의 복수국간협정(GPA, ITA, EGA)의 추진 동향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예상 효과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함

II. 개정 정부조달협정(개정 GPA)

1. 개정 정부조달협정 개요 및 추진 동향

- ☐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이하 GPA)은 WTO 설립 당시 정부조달시장의 상호 개방을 위해 WTO 일부 회원국 간 체결된 복수국간협정으로 1994년 WTO GPA가 발효되었음
 -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GATT 협상에서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협상국들의 견해차이로 인해 1947년 GATT 협정의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994년 WTO 설립협정(마라케쉬 협정)에서도 예외로 인정되어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한편 GATT에서 시장개방이 좌절된 이후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찬성하는 일부 회원국은 도쿄라운드¹⁾를 통해 다자간 협상과는 별도로 정부조달협정을 체결
 - WTO 설립 협정에서도 정부조달이 개방대상에서 제외²⁾되자 기존 정부조달협정 회원국들은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를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4³⁾로 편입해 복수국간협정 형태로 GPA를 발효(1994)
- ☐ 발효 이후 1997년부터 이루어진 개정협상을 통해 2011년 개정 GPA가 타결되어 2014.6월부터 일부 국가에 한해 개정 GPA가 공식 발효
 - 1994년 채택된 GPA는 협정 발효로부터 3년 이내에 협정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후속협상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1997년부터 개정협상이 개시됨
 - 15년에 걸친 협상 끝에 2011년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개정 협상이 타결 되었으며, WTO에 개정 GPA에 대한 비준기탁서를 제출한 국가에 한해 2014.6월부터 발효 중임

1) GATT의 제7차 협상으로 1973~1979년에 개최되었음

2) 최혜국대우(MFN)와 내국민대우(NT)의 예외 분야

3) 부속서 4에 포함된 협정은 협정 가입국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복수국간협정으로 정부조달협정 외에도 민간항 공기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육협정을 포함하며 낙농과 우육협정은 1997년 종료되었고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에만 참여하고 있음

□ 한국은 UR타결 직후인 1994년에 GPA의 24번째 국가로 가입하여 1997년 발효하였고 개정 GPA에 대해서는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진행 중

- 개정 GPA는 WTO에 비준 기탁서를 제출하고 이로부터 30일 이후 발효되며 우리나라는 비준 기탁서 제출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한국은 GPA 가입국이지만 아직 개정 GPA에 대한 비준기탁서를 제출하지 않아 다른 협정 가입국과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 수준은 개정 이전인 1994년 GPA 수준

개정 GPA 추진 동향

일자	주요 내용	한국
1994.4	WTO 정부조달협정(GPA) 채택(WTO 설립협정 부속서4)	가입
1996.1	WTO 정부조달협정 발효	1997.1.1. 발효
1997~	정부조달협정 개정 추진	
2011.12.15	개정협상 타결	
2012.3.30	개정의정서 채택(WTO 정부조달위원회)	비준기탁서 제출 관련 국내절차 진행
2014.4.6	개정 정부조달협정 발효(10개국)	
2014.4.16	일본 발효	
2014.7.4	네덜란드령 아루바 발효	
2015.6.5	아르메니아 발효	

주 :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캐나다, 대만, 미국, EU, 홍콩,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
자료 : WTO

□ GPA 가입국은 총 45개국(EU 28개국 포함, 2015.6월 기준)으로 현재 41개국이 개정 GPA를 발효 중이며, 기존 GPA 참여국(43개국) 가운데 한국과 스위스만이 개정 GPA 미발효 중임

- 2014.10월 뉴질랜드와 몬테카를로에 대한 가입 승인이 이루어져 개정 이전 43개국에서 45개국으로 참여국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두 국가 모두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비준절차를 완료해 연내 발효를 앞두고 있음
- 한편 기존 회원국 중 개정 GPA를 발효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위스로 우리나라는 비준기탁서 제출과 관련된 국내 절차와 논의가 완료된 이후 비준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

- 스위스는 개정 GPA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개정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임

GPA 참여국

개정 GPA 발효	1994 GPA 발효	GPA 가입 추진국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캐나다, 대만, 미국, EU(28개국), 홍콩,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 일본, 아루바(네덜란드령), 아르메니아, (연내 발효 예상) 뉴질랜드, 몬테카를로	스위스, 한국	알바니아, 호주, 중국, 조지아, 요르단, 키르기스 공화국, 몰도바, 오만,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몽골,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시칠리아, 마케도니아

주 : 뉴질랜드, 몬테카를로는 GPA 개정 이후 가입(2014.10)국으로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 완료
자료 : WTO

2. 개정 정부조달협정 주요 내용

- ☐ 개정 GPA는 1994년 GPA를 수정·보완하는 한편 조달 관련 기술의 발전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고 향후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우대조항을 명확히 함
 - 최근 정부조달이 전자화되는 추세에 맞춰 전자조달 조항을 신설하여 법령, 조달공고의 전자적 공표가 가능해졌으며 전자경매 시 입찰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제반 사항을 명시함
 -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도기적 조치(가격특혜, 대응구매, 양허기관 및 분야의 단계적 추가 등)를 담은 규정을 명문화함
- ☐ 기존 가입국은 GPA 부속서에 명시된 자국의 양허표를 수정함으로써 양허분야 및 기관을 추가하고 양허하한선을 낮춰 추가적으로 시장을 개방
 - 우리나라는 서비스분야 조달에 대해 호텔 및 기타 숙박서비스, 여행업 등 7개 분야를 신규 개방하고 건설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설장비 임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양허대상에 포함하였음

- 단, 건설 서비스를 제외한 일반 서비스 분야는 상대국이 동 분야를 개방한 수준만큼만 개방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부속서 7)

한국의 개정 GPA 서비스분야 신규 양허 현황

CPC코드	양허 분야
849	기타 컴퓨터 서비스
86764	기술적 검사 서비스
641	호텔 및 기타 숙박서비스
642	레스토랑서비스
6431	공연 제공이 없는 음료서비스
7471	여행업 및 관광운영업
518	건설장비 임대서비스

자료 : 1994년 GPA 협정문, 개정 GPA 협정문을 토대로 저자 작성

- 양허하한선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공기업의 물품조달 양허하한선을 45만 SDR에서 40만 SDR로 낮추고 공기업 서비스 조달 분야는 신규 개방함(양허하한선 40만 SDR)
- 미국, EU, 캐나다 등 주요 가입국은 양허하한선에 변화가 없는 반면 일본은 중앙정부의 물품·서비스 조달 양허하한선을 10만 SDR로 낮췄으며 이는 GPA 가입국 중 최저 수준임
- 개정 GPA에서 우리나라가 신규 양허한 기관은 중앙정부기관 7개(3청 4위원회), 지방정부 52개(1광역시, 51기초자치단체), 공기업 1개로 도시철도분야가 새롭게 양허기관 목록에 추가됨
- 한국도시철도공단에 대한 양허는 협정문의 부속서3을 통해 고속철도를 제외한 일반철도(conventional railroad)에 한정하여 건설공사, 시설유지 등 공공발주에 해당되는 분야만을 양허하는 것으로 명시⁵⁾

4) GPA 가입국은 양허하한선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조달에 대해서 협정 가입국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양허하한선은 IMF 특별인출권인 SDR로 제시됨. 단, 환율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각 가입국이 2년마다 SDR의 하한선을 자국통화로 계산하여 적용하고 이를 WTO에 통보함.

5) 부속서7을 통해 노르웨이와 스위스에 대해서는 동등한 시장접근을 제공할 때까지 적용하지 않음

GPA 주요 가입국의 양허하한선 개정 현황

(단위 : 만 SDR)

구분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1994	개정후	1994	개정후	1994	개정후	1994	개정후	1994	개정후
중앙 정부	물품	13	13	13	13	13	13	13	10	13	13
	서비스	13	13	13	13	13	13	13	10	13	13
	건설	500	500	500	500	500	500	450	450	500	500
지방 정부	물품	20	20	35.5	35.5	20	20	20	20	35.5	35.5
	서비스	20	20	35.5	35.5	20	20	20	20	35.5	35.5
	건설	1,500	1,500	500 ¹⁾	500 ¹⁾	500	500	1,500	1,500	500	500
공 기 업	물품	45	40	40 ²⁾	40 ²⁾	40	40	13	13	35.5	35.5
	서비스	-	40	40 ²⁾	40 ²⁾	40	40	13	13	35.5	35.5
	건설	1,500	1,500	500 ¹⁾	500 ¹⁾	500	500	1,500 ³⁾	1,500 ³⁾	500	500

주 1 : 상호호혜주의에 입각하여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양허하한선인 15,000,000 SDR 적용

주 2 : 양허표에 기재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25,000 SDR적용

주 3 : 양허표에 기재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450,000 SDR 적용

자료 : WTO

한국의 개정 GPA 양허기관 추가 현황

구분	추가 양허기관	비고
중앙 정부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지방 정부	울산광역시, 51개 기초자치단체(서울:25, 부산:16, 인천:10)	기초자치단체 물품서비스 양허하한선은 광역시 20만 SDR보다 높은 40만 SDR로 설정(건설은 동일)
공기업	한국철도시설공단	일반철도(Conventional railroad)만 양허(고속철 제외)

자료 : WTO

- ☐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부속서 7을 통해 학교급식을 포함한 정부 운영 급식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급식에서 국내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1994년 GPA는 학교 급식 조달에 대한 예외조항이 빠진 상태로 발효되어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구매할 때 국내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경우 이는 WTO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음(2005.9.9)
 - 이에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를 정부조달협정의 예외로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예외조항을 명시한 양허표를 GPA 추가협상 당시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이 개정 GPA에 반영됨

- 이후 체결한 FTA에서도 급식예외조항을 명문화하여 FTA협정문에 반영

- ☐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조항은 개정 GPA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된 단독입찰 대상 품목은 GPA 적용의 예외로 인정됨

3. 기체결 FTA와 개정 정부조달협정

- ☐ GPA는 FTA 등 국가 간 무역협정에서 정부조달분야 상호개방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개정 GPA 발효 및 가입국 추가는 다자 뿐만 아니라 양자차원의 협정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임
 - OECD 회원국 가운데 GPA 가입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78건 중 54건이 GPA 수준에서 시장개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남(2012년 기준)

OECD GPA 가입국의 자유무역협정 정부조달 챕터 수준 비교(2012년 기준)

GPA+	GPA +/-	GPA-	GPA 수준
17건	5건	2건	54건
21.8%	6.4%	2.6%	69.2%

주 1 : GPA 가입국이 GPA 가입국 또는 비가입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모두 포함

주 2 : GPA+(-) : GPA보다 높은(낮은) 수준의 양허,
GPA+/- : GPA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양허수준이 함께 포함된 경우

자료 : OECD(2012)

- ☐ 우리나라는 주요국과의 FTA 추진 당시 개정 GPA 협상 중이었으므로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했던 조항(학교급식, BOT, 중소기업 등)을 주요국과의 FTA에 우선 반영하였고 일부에서는 GPA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

* BOT : 건설·운영·이전(Build-Operate-Transfer) 계약을 뜻하며 시공사가 시설 건설 후 이를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발주처에 운영권을 넘겨주는 민간자본투자의 방식

- 한미 FTA는 중앙정부 물품·서비스 양허하한선을 GPA 수준인 13만 SDR에서 7만 SDR 수준인 10만 달러(1억 원)로 인하하였으며 이는 개정 GP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임⁶⁾

- 한-EU FTA는 GPA를 준용하되 GPA가 개정될 경우 자동으로 FTA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
- 우리나라는 한-미, 한-EU, 한-캐나다 FTA에서 기존 GPA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자본투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을 추가적으로 개방했으며 이와 동일한 수준의 양허하한선이 개정 GPA에도 반영됨

GPA와 기체결 FTA의 정부조달챕터 비교(1994 GPA 기준)

구분	칠레	미국	EU	캐나다	뉴질랜드
GPA가입	X	O	O	O	O
양허	GPA 유사	GPA+	GPA 준용	GPA+	GPA
중앙정부 (만SDR)	5/5/500	10만 달러/ 10만 달러/ 500만 SDR	GPA 준용 (개정 시 자동 반영)	10만캐불/ 10만캐불/ 500만 SDR	13/13/500
지방정부 (만SDR)	20/20/1,500	제외		제외	제외
공기업 (만SDR)	45/-/1/500	제외		제외	제외
민간자본 (BOT)	포함	(중앙정부 대상) 500만 SDR 이상	(적용대상 상이) 1,500만 SDR 이상	(중앙정부 대상) 500만 SDR 이상	(적용대상 상이) 500만 SDR 이상
학교급식		예외인정	GPA 준용 (개정 반영)	예외 인정	예외 인정
중소기업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비고				개정 GPA 발효시점부터 적용	BOT는 FTA에만 포함

주 : 양허하한선은 물품/서비스/건설서비스 순으로 기재
자료 : FTA 협정문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개정 정부조달협정 기대효과 및 향후 전망

- ☐ 1994년 GPA를 기준으로 GPA 회원국이 개방한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1.7조 달러로 추정되며 개정 GPA가 기존 회원국에 모두 발효될 경우 연간 약 800~1,000억 달러 시장이 추가적으로 개방될 전망(WTO 사무국)
- ☐ 현재 중국, 호주 등 정부조달시장 규모가 크면서도 GPA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국들이 기존 가입국들과 협상을 통해 GPA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부조달시장 개방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6) 미국은 GPA에서 지방정부 중 37개 주에 대해서만 조달시장을 개방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방정부 전체에 대해 조달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방정부와 공기업들을 모두 FTA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측은 중앙정부에 대한 양허만 협상

- 중국은 2007년 GPA협상을 개시한 이래 2011.11월까지 3차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2012.7월 기존 가입국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수정된 양허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 중국이 GPA 협상 진행을 근거로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소극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한중 FTA에는 정부조달챕터가 규정되지 않았음
- 향후 중국이 GPA 가입을 완료할 경우 GPA와 FTA를 통해 연간 조달규모가 1조 1,000억원 위안에 달하는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가능해져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기대됨
 - 한중 FTA 협정문에는 중국의 GPA 가입 시 정부조달챕터 협상을 시작 (further negotiation)한다는 조항이 있어 중국의 GPA 발효 후 협상을 통한 추가개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 개정 GPA 발효 시 우리나라는 실질 GDP가 약 0.02~0.17%, 후생은 5억 5천만~12억 5천만 달러가 증가할 전망(KIEP, 2013)
- ☐ 개정 GPA를 발효한 주요국의 양허하한선은 개정 이전과 거의 동일하지만 양허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미국은 중앙정부 기관 12개를 추가로 양허하였고, EU도 회원국의 중앙기관 126개를 신규로 양허
- ☐ 단, 비준기탁서 제출과 관련해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발효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Ⅲ. 개정 정보기술협정(ITA-Ⅱ)

1. 정보기술협정⁷⁾ 확대협상 동향

- ☐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이하 ITA)은 IT제품의 무관세화를 규정한 협상으로 WTO 각료회의의 각료선언 형태로 타결되어 1997년 정식 발효함(ITA I)
 - 미국이 1995년 마EC 간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제안한 이래 타결(1996.12월, 싱가포르)→발효(1997.7월)까지 단기간에 복수국 간 합의가 완료됨
 - ITA I의 대상 품목은 HS코드로 분류가 가능한 품목(Attachment A)과 분류가 불가능하여 품목명을 기재하고 각국이 협정 이행에 반영한 품목(Attachment B)로 구성되며 총 20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함
- ☐ ITA I 발효 후 회원국들은 ITA 확대협상을 개시하여 품목확대 및 대상 범위(비관세 장벽 포함 등), 참여국 확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2012년까지 협상 중단
 - 당시 확대협상의 최종 품목리스트에서 선진국(QUAD*국가)만 생산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포함되었으나 개발도상국이 제안한 소비용 가전제품은 제외되어 협상 결렬
 - * QUAD : 미국, EC, 일본, 캐나다, **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장비, 레이더류 등
- ☐ 2012.5월 주요국의 확대협상 재개 분위기 조성 노력으로 확대협상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세화 품목 범위를 둘러싼 마중 등 주요국 간 의견차이로 2013.11월 협상이 중단됨
- ☐ 2014.11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중 간 집중적인 양자협상 끝에 무세화 품목리스트에 합의하면서 협상의 모멘텀이 마련되었으나 2014.12월 전체 참여국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해 현재까지 교착상태임

7) 정보기술협정(ITA)의 정식명칭은 '정보기술제품 교역에 대한 각료선언'이다.

- 미·중 간 합의에 기초한 품목리스트를 바탕으로 2014.12월 WTO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한국대만 등 여타 참여국의 관심 품목*이 미·중 간 합의에서 배제되어 다자간 합의 도출에 실패

* 평판디스플레이(한국, 대만), 이차전지, OLED 패널 등

- 한국도 미·중 간 합의에서 배제된 핵심 관심품목의 양허확보를 위해 대만과 공조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전개했으나 중국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

ITA 협상 추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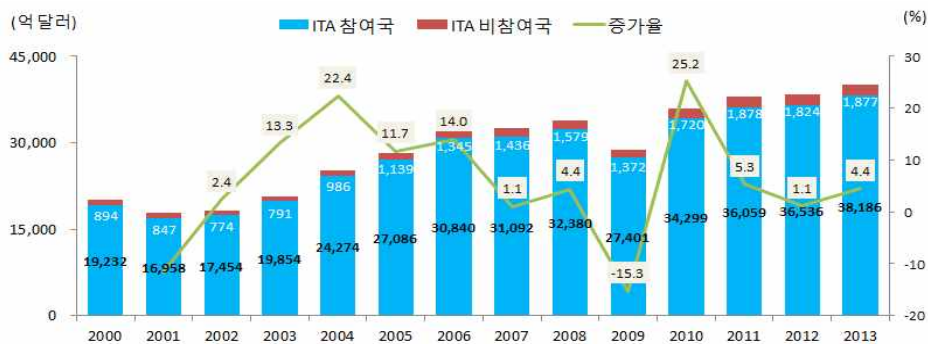
일자	주요 내용
1996.12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의 각료선언(ITA 타결)
1997.7	ITA 정식 발효
1998.6	ITA 확대협상 개시
1998.11	확대협상 품목리스트에 대한 협상국 이견으로 협상 결렬
2012.5	ITA 발효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2012.5	한국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확대협상 재개를 위한 컨설팅이퍼 공동 제출
2013.11	미·중 간 품목 범위에 대한 견해차로 협상 중단
2014.11	미·중 간 품목 범위에 대한 양자합의 달성(APEC정상회의 계기)
2014.12	미·중 간 합의 이후 협상 재개(제네바, 결렬)
2015.3	중국이 품목 범위와 관세철폐 기간 동시 논의를 제안
2015.5	ITA 확대협상 참가국 회의에서 조속한 타결 촉구

자료 : WTO

2.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배경과 쟁점사항

- ITA I은 세계 IT 상품 무역확대에 크게 기여한 협정으로 상품 교역액은 2013년 4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협정 가입국의 비중은 95.3%에 달함
- 세계 IT 상품 교역은 2000년대 초반 약 10%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2013년 4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협정 참여국의 교역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세계 IT 상품 교역 동향



자료 : UNCTAD

□ 그러나 ITA I 발효 이후 품목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①동 협정이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②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수출에 적극적인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이해가 합치되면서 확대협상 재개

- ITA I 은 1997년 발효 당시 세계 IT 교역의 주종을 이루는 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등 20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출시된 반도체인 MCOs⁸⁾, 리튬이온전지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확대협상에서 논의 중

ITA 확대 전후 대상 품목 비교

ITA I	ITA II 협상 대상
(통신기기) 교환기, 휴대폰, 전송장치, 모뎀, 광케이블 등	(통신기기) 부분품(ex-out)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프린터, FDD, HDD, CD롬 등	(의료기기) MRI, 초음파기기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장매체	(음향기기) 음향기기 부품, 헤드폰 등
(반도체) 원재료,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등	(반도체) MCOs
(반도체 생산장비) 이온주입기, 식각장비, 현미경, 스테퍼 등	(축전지) 리튬이온전지
(측정장비) 유량계, 압력계, 크로마토그래프, 분광계 등	(영상기기) 기타모니터, 셋탑박스 등
(일반전자부품) 축전기, 저항기, 인쇄회로, 플러그 및 소켓	(디스플레이) LCD, 제조장비, LCD용 접착제 등
총 203개 품목(HS 6단위 기준)	약 200여개 품목 논의 중

□ 우리나라도 IT산업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ITA II에 포함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으나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이를 반대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

- IT 상품 수출은 우리나라 총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LCD 패널, 리튬이온전지 등을 ITA II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국의 IT제품 수출 비중(%): 22.4(1997)→32.0(2000)→27.6(2010)→23.4(2014)

- 그러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은 한중 FTA에서도 동 품목을 장가부분철폐 또는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ITA 확대협상에서도 양허품목 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8) MCO는 기존 반도체 소자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능동소자를 부가한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로 기술진보를 반영하고자 하는 ITA 확대협상의 대표 품목임(단, 다양한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명확한 HS코드 분류가 불가능하여 Attachment B에 포함될 전망)

- 특히 LCD 패널은 중국의 대표적인 보호 품목으로 중국은 한·중 FTA에서도 장기철폐를 확보하였고, ITA 확대 협상에서도 품목리스트에 포함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

한국의 ITA II 관련 주요품목 對세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1)	HS 코드	對세계 수출액 (2014)	주요 수출국	주요 수출국 관세	한·중 FTA	삭제 요청 국가
LCD 패널	901380	24,295	중국	중국:5	10-A	중국
LCD 접착제	350691	235	중국	중국:7 ²⁾	10~20년	
기타모니터	852859	102	미국, 중국	미국:0, 중국:15 ²⁾ ~30	부분감축 or 양허제외	중국
리튬이온전지	850760	2,268	중국	중국:8/10 ²⁾	부분감축	중국, 터키
셋탑박스	852871	306	일본	일본:0	10년 or 양허제외	

주 1 : 관심품목인 MCOs, OLED 패널, LED백라이트 등은 HS분류가 불명확하여 제외(Attachment B 포함)

주 2 : 2015년 잠정세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한국디스플레이협회

- ☐ 협상 주요국인 미국과 중국이 2014년 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합의를 완료한 이후 우리나라대만 등은 마중 합의사항에서 빠진 자국의 관심품목의 반영을 주장하고 있어 중국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향후 협상 쟁점임
- 극심한 견해 차이를 보였던 미국과 중국은 2014.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장개방품목을 합의하고 2014.12월 WTO 전체 협상에서 합의된 품목리스트를 회람함
- 해당 리스트에서 한국과 대만 등 주요국의 관심품목은 빠져 있어 중국의 동 품목들에 대한 시장개방 수용 여부가 향후 ITA II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임

ITA II 협상 주요 참여국별 입장

	한국	중국	미국	EU	일본
IT수출시장 점유율(2013)	3.5%	14.5%	13.8%	28.0%	4.1%
공세분야	LCD, 이차전지, OLED	FPD 제조용 장비, 장비부품	MCO, 가전, 의료기기, 게임기	커넥터, 기타렌즈, 의료기기	부품, 게임기, 음향기기
수세분야	의료기기, 일부 음향기기	디스플레이 패널	광섬유제품, 복사기	TV, 모니터 등 가전	-
주요 입장	디스플레이 패널 포함	마중 합의사항 준용	마중 합의사항 준용	비관세장벽 논의 요청	조속한 타결 요청

자료 : UNCTAD, 국내외 언론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3. 개정 정보기술협정 기대효과 및 향후 전망

- ☐ ITA II 타결 시 우리나라는 IT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라 수출 17억 달러, 수입 12.2억 달러가 증가할 전망(KIEP, 2013.6월)
- ☐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품목과 디지털 가전, TV 등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이들 상품의 직접적인 수출 증가 및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가 공세적 위치에 있는 품목이 협정에 포함될 경우 수출확대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료 및 부품의 단가 하락으로 생산성과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음
 - 특히 ITA II는 MFN 관세를 낮추는 협정인 만큼 FTA와 같이 특혜원산지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 행정비용이 감소해 중소기업 활용에 큰 도움이 될 전망
- ☐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시장개방 대상 품목에 대해 중국이 한국, 대만 등 주요 IT 수출국의 요구 수용 여부가 협상 모멘텀에 영향을 미칠 전망
 - 2014.12월 제네바 협상 결렬 이후 APEC 통상장관회의(2015.5월) 에서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아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음
 - 우리나라는 주요 품목(디스플레이 패널, 리튬이온전지 등)에 대한 최선의 양허를 확보하기 위해 대만 등 우리와 이해관계가 같은 국가들과 공조하고 있음

IV. 환경상품협정(EGA)

1. 환경상품협정 개요 및 추진 동향

- WTO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이하 WTO)은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해 출범한 협정으로 2014.7월 협상출범 공동선언 이후 2015.5월까지 6차 협상 완료
- 환경상품과 관련 서비스는 WTO DDA의 협상의제로서 다자 차원에서 논의⁹⁾되고 있으나 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WTO, OECD, APEC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관세인하 대상 선정 작업이 지속되었음
 - APEC은 환경상품이 WTO 협상의제로 채택되기 이전인 1990년대부터 논의를 진행하여 2012년 정상선언을 통해 54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2015년까지 5%이하로 내리기로 합의한 바 있음
- 2013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통해 환경상품에 대한 WTO 복수국간협정을 제안하면서 WTO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
 - 당초 DDA 다자간 협상에서는 환경상품과 서비스가 동시에 논의되었으나 EGA는 상품에만 한정된 협정으로 서비스에 대한 협상은 별도 논의될 예정
- 2013.11월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 등 5개국이 협상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환경프렌즈그룹 9개국과 함께 2014.7월 협상이 개시되고 이후 2015년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가 가입
 - * 협상 참여국 : WTO 환경프렌즈그룹(한국, 미국,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캐나다, 노르웨이)+8개국(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등 17개국

9) 2001.11월 도하각료선언

EGA 협상동향

일자	주요 내용
2007.4	WTO 환경프렌즈그룹국(한국 포함)의 153개 품목 관세 감축 제안
2012.9	APEC 정상선언 : 환경상품 목록 승인(54개) 및 관세율 5%이하 인하(~2015년)
2013.6.25	美 오바마 대통령 ‘기후변화 행동계획’,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상 개시 제안
2013.11	중국, 대만, 코스타리카, 홍콩, 싱가포르 참여의사 표명
2014.1	복수국간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발표(다보스)
2014.7.2	한국 : EGA 공청회 개최
2014.7.8	환경상품협정 협상 개시(14개 회원국)
2014.7.9~10	1차협상 : 협상방식 및 시한, 품목 제출양식, 신규참가국, 진행상황 공개 등
2014.9.5	한국 :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
2014.9.22~26	2차협상 : (카테고리별) 대기오염관리, 고체 및 유해 폐기물 관리
2014.11.6	한국 : 협상 관련 국회 보고(이후 협상부터 공식 참여)
2014.12.1~5	3차협상 : (카테고리별) 폐수 및 물관리, 환경복원 및 정화, 소음 및 진동제거
2015.1	4차협상 : (카테고리별) 청정 및 재생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2015.3	5차협상 : (카테고리별) 환경 모니터랑평가분석, 천연자원보호, 친환경제품, 자원효율성
2015.5	6차협상 : 655개 품목 검토(회원국은 품목별지지/반대의사 1차 표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장현숙(2015)

□ EGA 협상은 1단계 사전협상→2단계 본격협상의 단계로 진행되며 최근 6차 협상까지 655개의 품목이 검토되었음

○ 협상 참여국은 자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해 품목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으며 미국, EU, 중국*, 일본이 가장 많은 품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개발도상국용 민감품목리스트, 장기관세철폐 허용 등을 포함하는 개발도상국 우대(S&DT)조항 포함을 요청

○ 단,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협정 대상 품목의 무역에서 참여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critical mass)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선적으로 품목 논의에 집중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협상 전 절차를 완료한 이후 3차 사전협상부터 협상에 공식 참여하여 관심 품목리스트 제출하고 민관 TF를 통해 업계와 함께 공동 대응 중

* 협상전 절차: 경제적 타당성 검토(2014.6)→참여결정(대외경제장관회의, 2014.9)→국회보고(2014.11)

- 절차 완료 이전에 열린 1,2차 협상에는 비공식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후 3차 협상 (2014.12.1.~5)부터 공식 참여해 환경편의성이 인정되는 품목 43개를 선정하여 제안 품목리스트 제출
- 한편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공동 민관 합동 TF(통상차관보 주재)가 구성·운영되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하고 있음

통합리스트 주요 품목

카테고리	주요 품목
대기오염 관리	기체·진공펌프, 기체 압축기, 팬, 산업용 후드, 여과기·청정기, 활성탄, 크로마토그래프, 가스·매연분석기, 가스누출탐지기 등
폐기물 처리	폐기물 소각로, 바이오매스보일러, 지오�멤브레인, 증류·정류기, 파쇄·분쇄기, 선별·분류·세척기, 혼합·반죽기, 컨베이어 벨트 등
폐수처리	상하수관, 탭·코크·밸브, 연결구류, 액체펌프, 물 여과·청정기, 활성탄, 부직포, 물 안쓰는 소변기, 슬러지 건조기 등
환경복원· 정화	오일스키머, 부교, 전기도양가열기, 토지측량기기, 토양회복시스템, 침식방지용 매트·발 등
소음· 진동제거	산업용 소음기, 응집코르크, 방음용 광물성 재료·제품, 유리제 절연유닛, 소음측정기 등
재생에너지	지열펌프, 풍력발전터빈·기어박스, 수력발전터빈, 증기·가스터빈, 태양광 셀·모듈·패널, 열교환기, 교류발전기 등
에너지효율	LED 조명, 전기·하이브리드·수소연료 자동차, 리튬이온축전지,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용 개폐기·변환기, 절연제 등
환경 모니터링	전자현미경, 온도계·고온계, 유량·액면계, 압력계, 가스·매연 분석기기, 매노우스타트, 분광계, 온도자동조절기기 등
자원효율성	재활용가능 재료(플라스틱·고무의 웨이스트/스크랩, 폐지 등), 바이오연료추출기기,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제품	자전거 및 부품, 모터사이클, 대나무·침엽수 목재·제품, 태양열 스토브, 특수어망, 식물성 방직용 섬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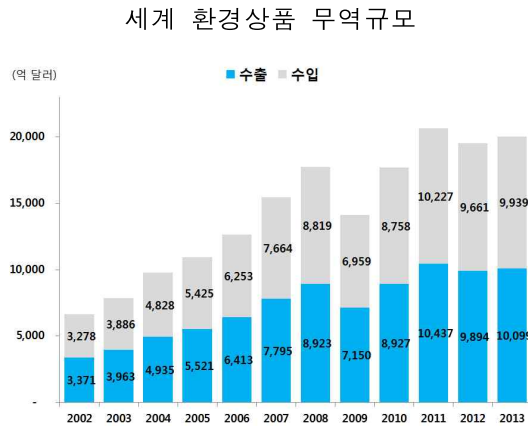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 환경상품 무역동향과 한국의 제안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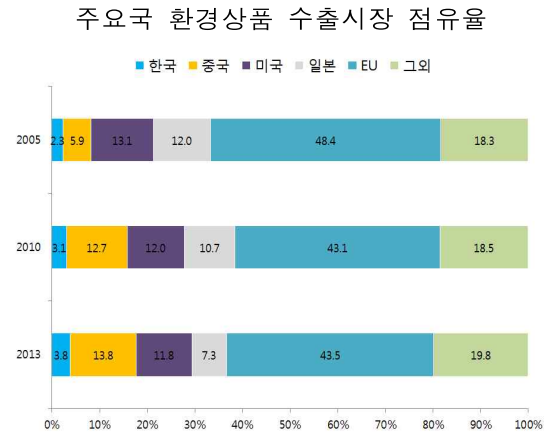
- 2007년 제시된 WTO의 153개 환경상품 리스트¹⁰⁾에 따르면 세계 환경상품 교역량은 2002~2013년 간 약 3배 증가
- 환경상품 교역량은 2002년 6,649억 달러에서 2013년 2조 38억 달러로 연평균 10.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
- 환경상품의 주요 수출국인 EU와 미국이 전 세계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환경상품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출시장 점유율도 2005년 5.9%에서 2013년 13.8%로 7.9%p 상승

10) 2007년 DDA 협상 재개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일본 등 11개 국가는 비공식 문서 형태로 12개 분야 153개 품목을 담은 환경상품리스트(Convergence List)를 제시하였음(문서번호 JOB(07)/54)

- 한국은 세계 환경상품 수출시장의 약 3.8%(약 384억 달러)를 차지하였으며 2002~2013년 동안 연평균 18.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성장



주 : WTO 153개 품목 기준, 대만 제외
자료 : UN Comtrade



주 : WTO 153개 품목 기준, 대만 제외
자료 : UN Comtrade

□ EGA 참여국의 환경상품 교역량은 세계 환경상품 교역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EGA의 관세인하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

- EGA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세계 환경상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6% (약 1조 6,544억 달러)에 달하고 협상 개시 이후에도 참여국이 늘고 있어 협정발효를 위한 기준 충족(critical mass)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세계 환경상품 무역규모 EGA 참여국-비참여국 비교(2013년)

(단위 : 억 달러,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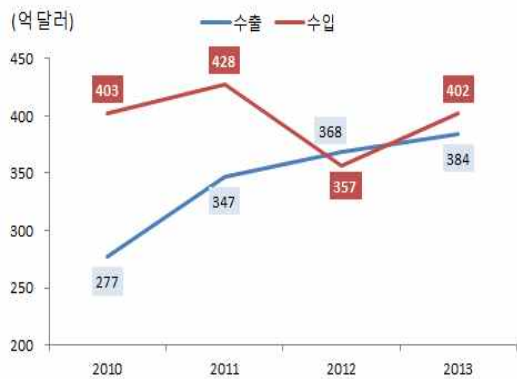
구 분		EGA	중국	EU	미국	한국	일본	캐나다	그 외	EGA외
수출	금액	9,081	1,397	4,390	1,189	384	739	171	811	1,018
	(비중)	(89.9)	(13.8)	(43.5)	(11.8)	(3.8)	(7.3)	(1.7)	(8.0)	(10.1)
수입	금액	7,463	996	3,121	1,300	402	355	309	982	2,476
	(비중)	(75.1)	(10.0)	(31.4)	(13.1)	(4.0)	(3.6)	(3.1)	(9.9)	(24.9)
무역	금액	16,544	2,393	7,511	2,489	786	1,094	478	1,792	3,494
	(비중)	(82.6)	(11.9)	(37.5)	(12.4)	(3.9)	(5.5)	(2.4)	(8.9)	(17.4)

주 : WTO 153개 품목 기준, 대만 제외
자료 : UN Comtrade

□ 우리나라의 환경상품수출은 총 수출의 34.5%가 중국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활발함

- 최근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무역은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여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수출국은 중국,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인 반면 수입선은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임

한국의 對세계 환경상품 수출입 추이



주 : WTO 153개 품목 기준, 대만 제외
자료 : UN Comtrade

한국의 환경상품 주요 수출입국 현황(2013)

(단위 : 억 달러, %)

순위	국가	수출		국가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중국	132.6	34.5	중국	99.8	24.8
2	미국	39.0	10.1	일본	83.2	20.7
3	일본	28.8	7.5	미국	55.3	13.8
4	베트남	24.8	6.4	독일	43.0	10.7
5	사우디	13.2	3.4	노르웨이	14.6	3.6
6	홍콩	12.8	3.3	이탈리아	10.5	2.6
7	인도	9.9	2.6	프랑스	10.1	2.5
8	멕시코	7.1	1.8	영국	9.6	2.4
9	브라질	6.7	1.8	싱가포르	6.3	1.6
10	인니	6.3	1.7	네덜란드	5.9	1.5
총액		384.2	100	402.0		100

주 : WTO 153개 품목 기준, 대만 제외
자료 : UN Comtrade

- ☐ EGA는 1단계 협상에서 각국의 관심품목을 제출해 이를 통합한 리스트를 회람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환경편의성이 인정되고 우리 산업경쟁력과 기술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43개 품목 리스트를 제출
- ☐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에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한 EGA차원의 양허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됨
- 對세계 수출 100억 달러 이상의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시장인 중국은 태양광 셀을 포함하고 있는 HS854140을 제외하고는 5%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은 한중 FTA에서 장기 또는 부분철폐 속함
- 對미국 수출은 한미 FTA로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EGA 제안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HS 코드	對세계 수출액 (2014)	연평균 증가율 ('10~'14)	1위 수출국	1위수출국 관세 ¹⁾
메탈실리콘	280469 ²⁾	129	32.1	미국	0
아크릴-초산비닐 공중합체	390130	10,151	33.9	중국	6.5/PR-8
탄소섬유	681510	1,462	34.6	중국	15/E
철강제파이프:무계목강관	730431	500	33.7	루마니아	0
	730439	465	10.1	미국	0
	730441	641	21.9	미국	0
	730449	406	0.0	사우디	5
	730451	156	133.8	인도	3.13
	730459	471	26.1	UAE	5
	730490	771	31.7	사우디	5
철강제파이프:용접강관 및 각관	730630	4,154	14.1	일본	0
	730640	1,883	4.0	미국	0
	730650	817	54.8	이라크	5
	730661	1,003	21.6	미국	0
	730669	68	-5.6	미국	0
	730690	562	-1.6	중국	6/E
가스 콘덴싱 보일러	840310 ²⁾	1,474	24.0	러시아	13.3
냉장-냉동고	841810 ²⁾	20,258	0.6	미국	0
가스온수기	841911	676	13.8	미국	0
열교환기	841950	8,218	19.8	사우디	5
물여과기	842121	3,788	30.6	중국	5~25/10~20년
컨베이어벨트	842833	3,410	14.1	중국	5/15년
탐핑머신/로드롤러	842940	34	26.2	베트남	무관세
파쇄-분쇄기	847420	702	62.6	인도	3.13
교류발전기	850164	271	-23.2	일본	0
리튬이온충전기 및 기타 충전기 ³⁾	850760	22,681		중국	12/PR-20
	850780	2,890	-48.4	프랑스	0
진공청소기	850819	269	-58.2	러시아	3~5
	850870	861	77.5	베트남	0
조명기기	851220 ²⁾	6,947	54.3	미국	0
	851310 ²⁾	90	22.3	미국	0~7.5
	940510 ²⁾	806	43.6	미국	0
	940540 ²⁾	6,348	83.4	일본	0
	854370	35,834	33.9	중국	0~10/10년
손건조기	851633	11	14.6	베트남	0
감광선 반도체 디바이스	854140	34,197	-3.5	중국	무관세
초음파 영상 진단장치	901812	4,682	16.6	중국	5~7/PR-10~15년
압력계	902620	353	11.3	미국	0
열측정계	902680	85	29.2	중국	0
크로마토그래프	902720	75	8.5	중국	0
분광계	902730	192	18.5	중국	0
기타측정기기	902750	406	43.9	중국	0
	902780	2,154	58.1	중국	14/10년

주 1 : 중국의 경우, 아직 한-중 FTA가 발효되지 않은 관계로 기준세율과 양허유형을 병기
(유형 E-양허제외, n년-n년 균등철폐, PR-n-기준관세율의 n%만큼 5년간 균등철폐)

주 2 : 환경용도표기(Ex-out)품목

주 3 : 리튬이온충전지의 HS코드가 2012년 신설됨에 따라 기존 850780에서 분리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산업통상자원부

3. 주요 예상 쟁점 및 향후 전망

- ☐ EGA는 WTO 일부 회원국만 참여하는 복수국간협정이지만 환경상품 및 참여국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쟁점사항이 존재
- ☐ 환경상품은 특성 상 환경용도표기(Ex-out)를 수반하므로 품목선정과 더불어 용도표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환경산업 및 환경상품에 대한 국제기준이 없으므로 협상참여국들은 2단계 본격 협상을 통해 EGA의 대상 품목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품목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HS코드는 상품의 용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환경상품은 품목의 특성 상 중간재인 경우가 많고 환경 목적 이외의 용도를 지니는 다용도 상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국의 HS 최종단위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용도를 명확히 표기해야 함
 -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수출입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일관된 세관행정에 문제가 발생해 협정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용도표기에 따라 관세혜택이 달라지므로 품목선정과 더불어 용도표기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 ☐ 발효기준 충족(Critical Mass)을 위해 협상 참여국, 특히 신흥국의 신규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함
 - EGA는 관세인하의 혜택이 WTO 전 회원국에게 돌아가는 협정이므로 협정 비참여국의 무임승차(free riding)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국의 교역량이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협정이 발효됨
 - 이와 동일한 발효방식을 택한 ITA는 교역량 기준선을 90%로 설정하였는데 현재 EGA 참여국의 교역량 비중은 약 80%수준이므로 발효를 위해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국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음

- 신흥국 참여가 확대될 경우 협상에서 범용상품군 포함을 두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의견차이¹¹⁾로 협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신흥국의 참여 확대는 EGA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우리나라는 미국, EU와의 FTA를 체결하여 이미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는 만큼 멕시코, 브라질 등 우리나라가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신흥국의 참여는 환경상품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단, EGA는 MFN관세를 인하철폐하는 협정인 만큼 최대 수출수입 상대인 중국과의 협상에서 한중 FTA에서 철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품목에 대해 중국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울 전망

□ EGA가 1단계 사전협상을 거쳐 2단계 본격협상에 접어든 만큼 우리나라도 민관 TF 등을 활용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협상 참여국과의 유대를 통한 최선의 양허확보 필요

- WTO 153개 리스트를 기준으로 EG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0.13%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 9,328만 달러가 증가할 전망(KIEP)
- 우리나라는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면서 협상 참여국 중 우리와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들과 함께 다자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략마련이 필요

11) 2011년 제시된 153개 환경상품목록에 대해 선진국은 HS코드에 의한 환경상품 분류가 어렵다는 이유로 범용상품군도 목록에 포함하였으나 개발도상국은 이에 대해 환경편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취한 바 있음

V. 결론 및 시사점

- WTO DDA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선진국 주도로 특정 의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국가들만이 협상에 참여하는 복수국간협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자통상체제의 수혜자인 우리나라도 모든 복수국간협정에 적극 참여 중
- 복수국간협정은 FTA에 비해 참여국이 많고,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므로 관련 산업과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ITAⅡ, EGA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MFN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므로 FTA와 같이 원산지규정 충족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참여국이 많아 파급 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음
- 우리나라는 개정 GPA, ITA Ⅱ, EGA에 참여하고 있으며 비록 WTO의 틀 밖에서 논의되고는 있으나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에도 참여 중
- (개정 GPA) 개정 협상이 완료되어 WTO에 협정을 수락하는 내용의 비준기탁서를 제출한 국가에 한해 2014.4월부터 협정 효력이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기탁서를 제출하지 않아 미발효 상태임
 - GPA는 가입국에 한해서만 협정이 적용되므로 개정 내용을 준용하기 위해서는 비준기탁서 제출과 관련된 국내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ITA-Ⅱ) 마·중 양자협약 이후 우리나라 관심품목을 반영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IT 산업의 국내적 위상과 협정의 실효성을 고려해 주요 품목 반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마·중 양자협약에 기초한 품목 리스트에 우리측 주요 관심품목인 LCD, 리튬 이온전지 등이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동 품목은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품목이므로 대만 등 이해관계가 같은 국가들과의 공조 필요

- (EGA) 환경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각 참여국이 제출한 리스트를 토대로 한 품목별 협상을 통해 대상 품목이 정해지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업계 현황과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야 함
 - EGA는 연내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상품에 다용도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품목 리스트 확정에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 발효조건(critical mass) 충족을 위한 신흥국 참여 확대 시 수출기회 확대 또는 협상 장기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향후에도 WTO 다자차원의 논의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DDA의 의제들이 복수국간협정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도 협정에 적극 참여하여 규범 설정 초기 단계부터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임